

제40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3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7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7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7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8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8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2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

상정된 안건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15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15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15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15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15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15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19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21
8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8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25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26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26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2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27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27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28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2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2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28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2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28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28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28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28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2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28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28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28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28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2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2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28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28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2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28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28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2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28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28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2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2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2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28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8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8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28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28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2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28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28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2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28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28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28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28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28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2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28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29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29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2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29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2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29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2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2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2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2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2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29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2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29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29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2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29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29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2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2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2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2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29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2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2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29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29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2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2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2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2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2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2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2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29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29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29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2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29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29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30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30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30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3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30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3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30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30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30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3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30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30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30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30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30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30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3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3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3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30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30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30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30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3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3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30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30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3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3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3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3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30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30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3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3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30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30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3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30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30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30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30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30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30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31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31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31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31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31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31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31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31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31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31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31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31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3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31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3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31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3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31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31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31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3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31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31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	31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31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3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31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31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31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31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31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31

(11시39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못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소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위원님들 의사정족수는 되었습니 다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먼저 류성걸 위원장님 몸이 편찮으셔서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돌아오신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세소위가 구성되는 것도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들 중에서 가장 난항을 겪어서 마지막에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돼 있는 상태에서 1회독도 못 한 상태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집단체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상황을 낮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뭐가 됐든지 적어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법안 상정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정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찬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소위 옆 회의실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기다리셨다가 왜 지금 다 사라지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법안소위가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난 회의들에서 계속 ‘어차피 소위 잘 안 될 테니까 소소위 열어서 마지막에 양당 간사끼리 합의해라’ 이런 식의 발언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한테 주어진 과업들을 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적어도 회의록에 남아서

국민들이 어째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를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조세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여야가 합의돼서 조세소위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왔습시다마는 여러 가지 산적한 심사대상 법안들을 그간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재정소위 상정 법안을 이유로 해서 과행을 겪게 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심사를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 아마 원하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세소위에 추가상정 안건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자정이 지나가면 정부제출 예산 부수법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더 이상 민주당 위원님들은 입장하지 않을 것 같고,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별도 공지를 통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가 개최된 이후로 별문제 없이 진행돼 오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 민주당 위원님은 단 한 분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

일모도원입니다. 정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얼음장 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기재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 지역구 일부 지역에 화재가 나서,

지금 다행히 다 진화는 됐습시다마는 속이 타들 어가는 이런 와중에도 이 회의는 진행돼야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해 보고 그다음에 개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소위원장님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사회를 볼 수 없는 사정이었지만 제가 사회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사일정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회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심사를 시작한 그 시점이 이미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회가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시작했고 또 소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지만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심사안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생겨 가지고 중단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절충·협상을 계속하셔서 가지고 거의 마무리되고 양당 지도부 협의까지 마치고 합의문까지 작성돼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밀린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과행돼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추가로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서 통보하시면서 가능한 빨리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독촉하시는 상황인데, 또 정부 측도 장시간 대기하는 이런 일이 아니면 통상 연말에 업무를 보셔야 할 것이 산적해 있을 텐데 면목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정오 중에 신동근 간사님하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오후에는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회의장님께서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하시고 기획재정위원장 앞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은 전체 21개 안건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내일 0시를 기해서 자동부위가 되도록 국회법 제85조의3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동근 간사와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심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는 속개가 됐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위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본회의에 정부안이 그냥 자동으로 상정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법안 심의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일단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양당에서 누가 어느 소위 위원장을 할 것인지를 두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11월 중순에서야 합의를 하

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소위 운영하는 일정이 정해졌지만 그렇게 합의한 일정도 또다시 교섭단체 간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계속 지연이 되거나 혹은 공지를 하고도 실제로 합의가 무산이 돼서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된 것만 해도 세 차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법개정안이 자동부의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1회독조차 하지 못하고 주어져 있는 이 두꺼운 심의자료들의 3분 1 정도도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우리 조세소위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사실 교섭단체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뭔가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다가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비교섭단체 위원으로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 그리고 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정해져 있는 심의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에 누구보다도 자주 왔고 혼자서 앉아 있기도 했었지만 추가로 저희가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연장된 일정이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세법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졸속심사를 스스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민주적인 심의를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다시 예산안 부수법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회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이제라도 양당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협치정신을 발휘해서 연장된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상훈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해야 될 법안들이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후 조세소위에 민주당 위원이 불참한 데 대해서 특별하게 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도 여야 간에 조율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만 앞으로도 조세소위든 재정소위든 기재위에서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풀어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해안을 발휘하셔서 가지고 신동근 간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조세소위가 이렇게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 저희가 다뤄야 될 일곱 권 중에 겨우 두 권을 1회독 정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서 있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빨리 회의장으로 나오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시고 회의 속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국회법상 의장과 양당이 합의를 하면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자동부의를 철회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하고 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잘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하시고 그 사항을 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21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

미 지정이 됐고 또 법에 의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내일 자로 해서 바로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자동부의로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부위의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동부위가 된다 해서 우리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전혀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여야 또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합의 형태로 된다면…… 물론 내일 0시를 기해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를 떠나서 본회의로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정을 할 수도 없고, 상정해서 논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안건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포함을 해서 그것과 연계되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조세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있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만큼 국민 앞에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무이기도 하고 이것은 배준영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섭단체가 협의하고 의장이 결정을 하면 국회법상 그렇게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 만큼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문구를 잠깐만 보시지요. 법안 문구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부의 자체가 합의가 됐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합의가 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은 제가 우리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어떻게…… 왜냐하면 밤 12시까지니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 그 시간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님과 지도부에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우리 조세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참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정회했다가 나중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장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관련되는 시간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가가치세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8항까지, 이상 6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위자료 중에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5건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자료 3번의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서를 면제하고 있고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도서대여 용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서대여 용역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도서열람 용역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에 조세심판원은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해서 일정 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 용역과 만화방 같은 실내에서의 도서열람 용역도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해서 실내에서의 도서열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은 정부안이기에 때문에 나중에 질의 과정에서 답변해 주고요.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에 대해서 현재 원칙적으로는 미발급하고 예외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예외적으로 미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재화 수입할 경우에 우선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그러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그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수입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이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한 다음에 당초에 발행했던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해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수입자는 과소납부분을 납부한 이후에도 매입세액공제할 때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미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미발급하되 일정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하도록 수정수입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연혁을 보시면 2013년 6월 이전에는 제한 없이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과소신고하더라도, 나중에 관세조사를 통해서 탈루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새롭게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소신고의 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 7월부터 수정수입계산서 미발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하반기에 정부는 지금 개정안과 유사하게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구조를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구조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도 동일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보류가 되었고 금년도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2021년 부가세 수입분은 45조 8000억 원으로 전체 부가세 중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1년까지 수정수입계산서 미발급세액 1858억 원 중에서 다국적기업이 1499억, 대기업은 212억으로서 미발급액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기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예외적으로 미발급하는 체계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은 부가세 제도의 특성상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과세관청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축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와 형벌이 부과하는데 이것에 더해서 미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형식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나 상습적인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발급함으로써 고의적인 과소신고 유인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수입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할 유인이 일부 감소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라든지 국내시장 교란에 대한 세관당국의 대응성이 약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마이너한 부분입니다만 여기에서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법 쪽에서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한다는 용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에 여기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몇 번 개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작년에도 이걸 냈었는데 결국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 세관당국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런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관세법에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추가로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유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보니까 최대 2억까지로 했는데 2억이면 충분한가요? 미제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충분한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추가 과태료이기 때문에 최대 3억 원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 과태료인데 다국적기업들이 거래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이걸 더 키워 가지고, 추가 과태료 부분을 키워서 이 제도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면 한번 시행해 보다가 이게 너무 적으면 다시 올리더라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과태료를 나중에 또 인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던 것은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 해서 그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관세청에서는, 관세관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 따라서 실제 시행을 해 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과태료를 더 강화를 하든지……

○소위원장 류성걸 제 말씀은 과태료만 가지고 조금 전에 우려했던, 세 번째 올라올 정도의 이 개정안을 처리했을 때 2억에서 얼마 더 올라가면 이런 게 다 해소될 수 있는냐는 것을 여쭙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충분하다는 확답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확실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도 이 개정안 보류 과정을 알고 있는데요, 유경준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큰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 측에서 저 정도…… 저는 사실 유동수 위원님 지적대로 2억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자신을 하고 또 추후에 우리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관세법도 개정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통과한 관세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법에 따라도 시정요구를 이행하기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과소신고의 동기가 남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기는 합니다, 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수정세입계산서 미발급의 80%가 다국적기업, 11%가 대기업인 만큼.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행정부가 이것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을, 단순히 2억 했을 때의 사항으로써 앞으로 문제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5쪽입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2023년 7월부터 24년 말까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건당 200원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08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법인사업자만을 의무발급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미 의무대상자가 발급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몰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7월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 것의 반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년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7월부터 24년 말까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1억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대상이고 24년 7월부터는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21년, 작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서 일부 거래규모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4년 말까지로 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특례 적용기간이 2년 6개월이고, 반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이 일반과세자보다 1년 더 짧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는 나중에 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전문위원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기간이 좀 다르다는 문제만 지적했는데, 기간을 달리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보시면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하고 시작점이 다르고 종료 시점은 24년 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점에 가서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종점을 맞춘 겁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그때 당시에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해서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또 그러면 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1억 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내는 게 23년 7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의무발급사항은 아닌데 1억 원 이상 그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 아니에요? 작년 말에 4800이 8000으로 확대되면서 법 시행이 올해 7월 1일부터 가능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는 한 시점에 이게 다 일몰 종료되면, 종료 시점에서 원래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하나의 제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원래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때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몰 종료하는 시점을 24년 말로 통일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세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4800부터 8000까지 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쉽지가 않잖아, 이걸 정착하기가. 실장님,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유동수 위원 간이과세자가 지금 4800만 원 이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영수증이지요.

○유동수 위원 그래서 4800부터 8000까지 해당되는 애기잖아요. 여전히 8000만 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주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시행한 제도와 똑같은 기간 동안에 준다는 건 너무…… 영세한 사람한테 더 많은 기간을 줘서 계속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게끔 하는 게 맞지 그걸 기간을 일치시키는 게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기간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항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9쪽입니다.

현재 판매 또는 결제 대행업체가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2쪽은 인용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조특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특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24쪽입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라든지 재정적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자녀 양육자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승차정원에 따라서 7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있고 6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14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에도 승차정원에 따라 면제한도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다자녀가구의 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대수 제한이 없지만 같이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구입 차량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에서의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가구당 1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도 1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정부에서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이 개정 취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본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또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다자녀가구이기 때문에 카니발같이 큰 차 1대일 수도 있지만 작은 차가 2대나 3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적용토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진 위원** 어찌 됐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하여튼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느냐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금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얼마쯤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다자녀가구 비율은 모르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현재…… 작년의 경우에 새로운 신생아가 26만이 태어났습니다.

○**고용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유자녀가구 중에 한 7.4%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둘째부터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뒀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보기 힘든 세 자녀 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만 되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만일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누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저출산인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줌으로써 아이를 낳는다고보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원책인 건데, 저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두 자녀 가구도 한 150만 원 한도, 그러면 세 자녀의 50%이지요. 이렇게 되면 세수감이 많이 큰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셋째만 이런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나 대상이 너무 적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은 2자녀부터 혜택을 주느냐, 3자녀부터 혜택을 주느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하기를 일단은 2자녀에 대한 지원혜택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에 반영을 하고 차츰 넓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출산정책적으로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주택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다 3자녀부터 적용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2자녀부터 줬을 때 세수감이나 이런 효과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준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를 아까 26페이지 끝에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따온 것 같은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존재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일반적으로는 지금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여기는 그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걸 따온 거고 일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맞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합계출산율을 보면 3분기에 0.79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유경준 위원** 그러면 1명도 안 낳는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출산 장려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기왕 이런 걸 하려면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보다는 2명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자녀수를 가지고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도입을 하시고 시행성과를 봐서 추후에 또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한 개 여쭙볼게요.

지금 이 항목이 기존 항목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나는 다르다고 봐요. 앞에 한번 쭉 보십시오. 기존 항목은 장애인, 환자, 여객운송, R&D인데 갑자기, 물론 출생 장려를 위해서 바람직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가 계속될 수 있는데 예컨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릴 겁니까?

그래서 출산 장려라는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도 취득세를 3명 이상부터 해 주고 있는 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이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소위원장 류성걸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 제도 말씀하십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준 위원 꼭 하려면 하십시오. 꼭 하려면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3명만 있는 게 전체가 아니고 18세 미만의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해당될지는…… 아까 7%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9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자녀든 3자녀든 지금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차량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라고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과연 국가의 다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방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차량 구입에 대한 개소세 면제 말고 다른 방향의 지원을 더 고려해야 하고 이런 방향성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9쪽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별소비세에서 보석과 귀금속

에 대한 과세방식이 판매장 과세에서 제조장 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개별소비세법에 남아 있는 판매장 과세와 관련된 판매 용어들을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16시44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2쪽입니다.

개정안은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율 계산식에 가격변동지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던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pm 50\%$ 한도 내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탁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고 매년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함에 따른 종가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그다음에 가격 등락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은 정해진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형식적으로 정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에 세율 결정권을 주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서는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하고 있고 지난 8월 법률 개정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100%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아마 정부가 물가조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그 명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너무 지나치게 탄력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한 가지 여쭙볼게요.

지금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직전연도 12월 31일의 기준세율’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주는 1kl당 얼마 얼마 하고 또 맥주는 1kl당 얼마 얼마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첫 번째 대통령령 말씀하신 것은, 탄력세율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지금 저희가 50%로 했지만 물가가 좀 더 안정이 되면 50에서 30으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이라든가 세율, 과세기간 이런 것들은 법조문으로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위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소위원장 류성걸** 금액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금액 자체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건 이게 법으로 1%, 2% 이렇게 딱 숫자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소위원장 류성걸** 이게 종량세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종량세이기 때문에, 기준세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전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숫자나 구체적인 결

로는 못 나오고 12월 31일 기준세율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의 취지는 아닌 거고요. 결국은 가격에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맥주하고 탁주가 종량세로 되어 있고 물가연동제가 되다 보니까 매년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종가세라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좀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맥주하고 탁주가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세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덜 오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도입의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뭐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 2023년도 주세 세입 예산안을 보니까 3조 2151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22년 본예산 3조 7374억 원 대비해서 무려 522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14% 감소해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2022년도 본예산보다도 14%나 줄여서 내년 예산안을 잡고 있던 말이에요. 계상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법률안이 개정도 안 됐고 심사도 안 됐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서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그건 아니고요.

○**양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이렇게 5000억 이상이 감소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주류소비량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양경숙 위원** 주류소비량, 어떤 기준으로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내년에는 주류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주류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한 거예요? 근거를 대야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설명을……

○**양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한 세목에서 14%나 세입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감소계상인데 근거를 정확하게 대면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주류소비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거라고 전망했냐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요, 아니면 개정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개정될 것을 전제로……

○양경숙 위원 지금 법인세라든지 다른 법안들이 있지요, 부가감세들이 전부 개정안을 내면서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세입예산은 정부안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편성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세입예산액 얼마예요? 개정을 전제로 세입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얼마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31쪽 밑에 나와 있네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337억이 감소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서 얼마지요,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연간으로 337억이 감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2022년 본예산보다 337억만 줄어 들어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3조 7037억이네요. 맞아요? 계산 좀 해 줘 보세요.

아직 세법이 개정도 안 됐는데 개정될 걸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액을 계상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세법을 낼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전제로 항상 그렇게 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법의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성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세입예산 대폭 올립니다. 그러면 맞지요?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큰 변화가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 가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예결특위에다가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정부 측도 분명하게 이것 빠뜨리지 말고 반영하세요,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아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통상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이게 벌써 몇천억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장혜영 위원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장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세입예측 감소 관련해서 짚막한 질문인데요. 이 337억 원이 감소한다고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산 근거 나중에 장혜영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변동지수라든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같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지수를 산식에 포함시키는 건데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가 좀 합당치 않은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김상훈 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조세와 관련된 것을 법률로 정하려면 과연 필수적으로 어떤 걸 대상으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안 있잖아요. kd당 얼마 하고 그 다음부

터 이렇게 하면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물가상승률, 근원물가든지 아니면 소비자물가든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고.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여러 의견들이 나오셔서 저는 약간 절충, 앞으로 이걸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물가상승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종가제라는 그 탓으로 탁주·맥주의 가격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물가안정이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의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탁주·맥주의 가격에 제조사들이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비싸게 탁주·맥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깐 이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탄력세율의 범주가 너무 크다고 보고, 그것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이 최근에 아주 심한 편이니깐 그것도 좀 짧게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구분하실 게 보통 저희가 탄력세율 할 때 30%·50% 얘기하는 건 세율 자체가 30%·50%로 옮기는 건데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의 30%·50%를 반영하는 거라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대안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식에서 세율이 나와 있는데 세율을 금액이라는 말로 바꾸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새로운 세율이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데, 세율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좌변과…… 앞뒤로 있는데 그것을 금액이라는 말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것을 금액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준금액으로 하고 이것도 금액으로 하면…… 상승률은 금액,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세율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자, 대안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16시56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인지세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지세의 납부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재산권 이전·변경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적금 통장 등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에서 인지세의 납부시기를 명확화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인지세 납부기한에 대한 조문이 없으므로 문서작성일을 납부기한으로 해석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인지세 납부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분양과 관련해서 부동산 준공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의 시간차가 많이 나고 실무적으로도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례가 유지되는 한은 법 개정 이후에도 법 위반의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께 여쭙볼게요.

그렇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안을 해야 하지요? 대안은요?

○전문위원 김경호 사실은 그래서 인지세법 전반적으로 조정이, 개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저도 인지세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2002년도 1월 1일 날 세액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이 세액을 변경을 안 했고요. 그 사이에 보면 유가증권은 단일세액으로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동산양도 있잖아요. 자동차·건설기계·20t 미만 선박, 이것도 그냥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지세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체계도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세액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필요하다면 내년이나 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소위원장 류성걸 인지세 관련된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유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안을 갖고 온 것은 당장에 굉장히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일단 개정을 하고 내년에 인지세 관련된 사항을 전체 다 검토를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는 걸 조건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잠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17시00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40쪽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0.5%의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도에 IFRS17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업자의 수익·비용 인식체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보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보험료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현행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육세의 과세표준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법인세법 심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 IFRS17을 조기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류했던 사항과 같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류했던 것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3쪽입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키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 개인사업자가 많은 대부업자도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됨에 따라서 개정안은 소득세법도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RS17 도입에 따라서 보험업자의 보험료수익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보험료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42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그전에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을 뺐습니다. 과표대상에서 뺐는데, 새로운 IFRS17이 도입되면서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에 해당하는 새로운 IFRS17의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보험업자의 수익금이 종전하고 동일하게, 귀속시기도 동일하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그것은 앞에 지나간 것이고요. 뒤에 수익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보험료를 받으면 바로 그때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앞으로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발생주의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쟁점 하나는 이미 IFRS를 적용해서 기이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소급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과세당국에서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도 같이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번은 조문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세법이 20년 말에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미반영된 조문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17시04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5항과 256항, 이상 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기준으로 6번과 15번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64쪽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800불까지 면세하고 있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15만 원 한도에서 경감하고 있는데 그 경감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구매액 약 3386달러, 436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2739달러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휴대품 자진신고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면서까지 자진신고 감면한도를 상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자진신고비율은 2015년 6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1년 현재 이미 9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경감액을 산출세액의 30%로 유지하면서 한도만 2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한도 15만 원 이하인 여행자 휴대품 구매에 대한 관세혜택은 현행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감한도 상향이 아니라 경감률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상치되는 견해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유경준 위원 신고율이 2021년에 92%에 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64%에서 92%에 달한다는 게……

○유동수 위원 적발된 사람을 안 했다고 보는 것 같아.

○**고용진 위원**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하려고 해?

지금 이 수치는 혹시 정부에서 얘기한 수치입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예, 65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고 불이행에 대해서 검사 시에도 미신고해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목표가 100%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 숫자는 관세청에서……

○**고용진 위원** 현실적으로는 이게 아니지요, 92%일 리가 없지. 자진신고를 거의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아요?

○**유경준 위원** 이게 표본조사 수치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 얘기 들어 보고……

○**신동근 위원**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유동수 위원** 들어 보세요.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취지 자체는 어떨지 모르니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이 통계가, 여기에 근거자료로 제시한 정도가 되면 필요가 없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통계가 잘못됐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 통계는 분모는 적발 건수하고 자진신고 건수를 합한 거고요 분자는 자진신고 건수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게 해서 관세청에서 저희가 통계를……

○**유동수 위원** 적발 못 하고 간 건 아예 빠져 있는 거잖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 통계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부터 쭉 보시면 자진신고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유동수 위원** 제가 세제실장님한테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여행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가 얼마까지 한도다,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실제로 외국에 가서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백(bag)을 하나 샀는데 신고 않고 들어오면 그 입구에서 발각이 됩니다. 거기서 발각이 됐을 때 ‘내가 외국에 가서 샀습니다’ 이러면 자진신고로 쳐주고 그냥 거기서 세금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발견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아예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진신고가 본인이 직접 써서 자진신고가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사람도 그냥 자진신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이걸 들은 것은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15만 원……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10년 정도 됐다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효과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은 99쪽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혈액형 분류용 시약에 대한 품목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HS코드, 품목분류 코드가 혈액형 분류용 시약에 대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산 축전지에 대한 세율을 8%에서 무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관세율표를 개정하면서 연산 축전지에 대한 HS코드를 바꿨는데 바꾸면서 원래 무세여야 하는데 8%로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수정하는 겁니다.

○**유동수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17시11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254항까지, 이상 171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특법 관련된 사항은 4권부터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5권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4권은 일몰 연장이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5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안은 김경만 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 안 그리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경만 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3년·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었고 정부안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김경만 의원님께서서는 직접투자의 소득공제 구간도 각각 2000만 원씩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직접투자금액의 3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고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서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출자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투자 소득공제 구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이 그동안 여러 차례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확대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세법 전체 심사를 할 때 일몰 연장의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져온 걸 보면 한 건이 1년이고 또 한두 건이 2년이고,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3년 기준을 다음번에 가져오십시오, 왜 2년이고 왜 3년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투자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3년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소비라든지 또는 일시적인 그런 사항 또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은 2년,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2년·3년 했던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년·2년 관련해서 세제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평가가 필요한데 예타 특례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편의주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조세지출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그래도 장기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3년 정도 하고 또는 5년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10년이나 5년 이렇게 제안했던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

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비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검토를 해야 될 때는 2년이라든지 무슨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전에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2년·3년에 관련되는 사항은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쪽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과 관련된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 이익에 대해서 연간 5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행사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양도 시점에 대해서 양도이익과 행사이익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의 한도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김경만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5000만 원 아니면 5000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비과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대신에 누적한도를 5억 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96년도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행사이익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에 비과세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를 다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경우에는 소수 인원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납부대

상이 됨으로써 해당 비과세의 적용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소득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1인당 과세대상 소득이 7400만 원으로서 당시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을 고려한다고 하면 1인당 평균 행사이익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에도 소수의 고액 행사이익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평균 행사이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향후에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실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비과세 한도 확대가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우선 정부 측에 질문 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한도액을 3000에서 5000으로 상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왜 4배나 올려야 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우수인력을 좀 더 유입하게 하는데 있어서 더 강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도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5배인지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동안 사실 벤처업계에서는 2억 정도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세제를 하면서……

○고용진 위원 벤처업계에서 2억 요구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언제부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 얘기는 벌써 5~6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2억 요구했었는데 그사이에 2000이었다, 3000이었다, 작년에 겨우 5000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그리고 그 요구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 있었는데 그렇게 유지하다가 갑자기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10배 해 버리지 그래요? 뭐예요, 근거가?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신고실적이 6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업계에서도 행사이익은 미실현 소득인데 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시켜 달라, 그런데 20년 기준해서 스톡옵션 행사 인원의 약 95%가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고용진 위원 제가 아까는 왜 몇 배나 하면서 금액을 크게 얘기했지만 2억 미만이면 사실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다 비과세하자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게 지금 뭔가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지책이다 그겁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은, 일단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분을 10% 이상 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비과세 실적이 적은 이유가 사실 그런 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2억 원까지 한도를 인상하면서 비과세 한도가 너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누적한도를 저희가 5억 원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사 때 안 하고 양도 시까지 이연하는 것, 13페이지 한번 볼래요? 물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실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것은 행사 때 행사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양도가 일어날 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일종의 과세이연제도이고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를 늘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한도를 키우는 것보다는 매각할 때 과세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야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다음번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도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유동수 위원** 저는 한도에 관해서 늘리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도 관련되는 사항은 2년 연속 늘리고 있고, 물론 전체 행사이익의 5000에서 2억 되는데 누적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누적이 없었는데 누적한도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배 의원안 같은 경우는 연간 2억이면서 사실은 한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보류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할납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쪽입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납부특례의 대상 임직원 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의 임직원이고 이 특례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일 뿐 세액 자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세특례에 비해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행사 시점에 부여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과세특례 요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것’을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례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금 전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7쪽입니다.

외국인 및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특례입니다.

○**양경숙 위원** 13쪽은 안 해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유동수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게 있을지 몰라서……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13쪽 사항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8쪽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술자·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된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70%, 나머지 2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간 19%의 단일세율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국인이 복귀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들은 현재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양향자 의원님 안과 배준영 의원님 안, 정부안은 이를 10년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과

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해서 단기간 생활할 때 그에 따른 생활비가 과다하고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국인과 동등한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후 10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세특례기간을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데요.

사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국계,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 고소득자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5년이면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5년에서 10년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한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워낙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여러 차례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실적이 크지가 않아서 저희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7년 정도는 외국에서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수인력들을 유치하려면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안에 더해 가지고 소부장 관련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부장 종료 사유로 일본 수입비중이 16.9%에서 15.4%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감소율이 겨우 1.5%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환율, 에너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유지를 통해서 소부장의 국산화를 증진시키고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그것을 늘리는 의견으로 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저도 배준영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소재·부품·장비가, 원래 경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소재산업 같은 건 장시간 걸리는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응용기술은 발달해도 근본적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부품·장비를 충분히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준영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효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검은 머리 외국인 지적사항은, 한국 국적 없는 외국인근로자만 적용이 되고요 이중국적자는 제외됩니다. 저희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부장은 대일본 수입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3년 한시지원 입법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은 일몰 종료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 전문인력 4명 중에 1명, 약 27.3%가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높으면 소득을 많이 창출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3~7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과세 특례기간을 대폭적으로 배로 늘려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최대한 한다면 하더라도 7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사람들은 소득도 높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면 세금도 내게 해야지 왜 특례를 계속 줘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기간도 배로 늘려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내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박하면서 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간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근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소부장 관련해서 적용기한 종료와 또 3년 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다국적회사가 한국에서 R&D 같은 것을 할 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을 봅니까?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자동차회사가 한국의 R&D 하는 쪽에 파견 와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 것을 받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일단은 그 대상자가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인데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금액이 30만 불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플러스 외국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면서 한국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런 데에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홍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에 디자인 개발을 총괄하는 외국인이 있잖아요. 동케볼커인

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도 이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분이 기업부설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 외국의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해당이 됩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제가 이런 계통을 좀 아는데, 이게 필요성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10년까지 늘리는 건 반대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제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올해 지원실적이 6억밖에 안 됩니다.

○**홍영표 위원** 하여튼 저는 늘리는 것 반대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근거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신에 5년간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총 1097명에서 2014년 8750명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19년에는 약 362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규모는 2022년에 901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조세특례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간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이 최소 1억원을 넘어야 19%의 특례세율 적용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고소득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과세특례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 세법 개정 이후에 특례세율이

계속 19%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두 차례 상향돼서 고소득 계층의 내·외국인 간 조세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정 지원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생활할 때는 지원하는 의미가 있겠으나 영구적으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3~7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1년 조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보고서를 낸 것 아시지요? 그것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실제 외국인 고용인원 증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국내 연구기관이 연구보고를 통해서 세금혜택 많이 준다고 고용이 늘어나거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많이, 우수한 인력들이 유치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년을 외국인 고소득자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평생 내내 세금혜택을 주겠다라는 발상을 왜 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국인근로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방어기제를 작동하지도 않고 세금혜택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고소득자들에 대해 평생 동안 세금혜택을…… 이게 외국인 부자감세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이것을 평생 내내 주겠다라고 느닷없이 들이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것은 실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과거에 저희가 동북아 경제허브를 만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노력을 했을 때 잘 안 된 부분들이 사실 헤드쿼터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드쿼터가 들어오려면 사실 거기에 일하는 외국인들, 특히 임원진 이런 분들, 임금의 총액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

주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경쟁상대들인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 17%, 22% 단일세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한 거고요.

기한을 없앤 것은 뭐냐 하면, 과거 전문인력의 추이를 보시면 12년도, 13년도에 5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가 즉 감소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전에는 일몰기간이 없었던 단일세율이 폐지가 되고 5년이 도입된 게 14년도입니다. 사실상 그 이후부터 세금문제에 얽히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의 기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해외 우수기업의 헤드쿼터가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에 있는 외국기업, GM코리아인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GM이 파산했어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무려 200명의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임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임원보다 최소 3배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한남동에 집 줘야지, 위험수당 줘야지……

그래서 그게 노사 간에도 아마 큰 문제가 됐었고 회사가 부실한 것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그런데 이 세금 하나 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들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유인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도합니다.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은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 근거 이런 것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이 부분은 평생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2쪽입니다.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기한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것을 10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복귀 결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촉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로 내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복귀했을 때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급여 말고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 단계 더 시키겠다, 1~2년 안에 시키겠다, 이런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보너스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맞춰주는 게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말씀드리면 세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고요. 세제가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낮추는 것도 전부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세금이 투자자의 큰 결정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사람도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것도 자본이 들어오는 데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있게 되면 개별 기업들은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의 제도를 감안하고 나서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홍영표 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이 얼마

나 단순한 논리로 법인세를 계속해서…… 법인세가 낮으면 해외투자가 많이 유치될 거다? 그렇지 않단िया요. 제가 유럽에서 직접 그런 업무를 해봤어요. 꼭 세금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노사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세금은 여러 가지 결정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미국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시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기술자·근로자 또 어떤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인세도 그렇고 외국인이나 유턴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것은 사실상 어떠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국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크다는 것,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최소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제나 감면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내국인들하고 단순 비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것이고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평평한 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에 관련되는 것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지금 17% 적용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여기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데도 같이 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기조를 갖다 보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세금 많이

값아주는 그 기준만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고 뭐고?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평평한지 어떤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세제실장님,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국내에 복귀하는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통해서 감세를 해 주는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외국인 근로자·기술자, 그러니까 우수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기재부는 추정 곤란으로 돼 있는데요 예정처에서는 24년도에 37억 원, 25년도에 79억 원으로 돼 있고요.

○김상훈 위원 연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연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연간 한 40억에서 80억까지로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얼마나 될지 몰라서…… 연간 지원실적은 130억 원입니다, 21년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단일세율 적용받는 것은 20년도에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정부 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특례제도를 통해서 감세되는 연간 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아주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외국인하고 같이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5쪽입니다.

청년지원 관련된 금융상품 간에 서로 요건들이 달리 적용돼 있는 것들을 같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37쪽에 관련된 자료를 표만만 들어 놓으시고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예를 들어 이자소득세에 대한 연부 납부, 연납금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8쪽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설하고자 하는 국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24년 말 이전에 매입해서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매입액 2억 원 이하의 국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이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실질 수익률 증대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는 잠재적 투자계층이 고소득층에 주로 분포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국채투자에 대한 가산금리 및 과세특례 혜택이 ETF 방식의 국채투자나 회사채 등 민간부문의 다른 채권투자를 구축할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 심사와 연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6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추가하는 경우에 세금 관련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채법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국채법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고요. 5월에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채를. 그런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소득이 2억 원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14%의 특례를 준다는 것인데 그때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시기가, 그러니까 5월이나 9월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채권시장이 마비됐거든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소화 잘 안 되고 있고요. 공채도 공공기관이나 공사채도 발행을……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사채 아예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은행채나 금융채도 마찬가지거든요.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 안 사 겁니다.

그런데 국채를 개인한테만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 가면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아요. 저는 이것 절대 반대고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세금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 국채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채권시장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비됐는데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사나 이런 데는 자금 조달 못 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홍국생명 사태 아실 거예요. 콜금리 취소한 것, 그러다가 다시 갇기로 한 것, 이것 때문에 국제신용도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거의……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조치를 했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렸는지 국제신용도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 법안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국채로 돈 다 빨아들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지금 채권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용 국채를 도입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채시장의

수요를 조금 다변화해서 국채의 수요를 단단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회사채나 CP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발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관 내에서 투자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에 투자가 될 수 있는 회사채는 개인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혜택이 너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간 구매한도도 개인용 국채는 1억 그다음에 누적적으로도 2억으로만 해서, 그리고 개인 간 거래는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발행시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전반적인 채권시장과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르는 상황이라서 우리만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각각 2억씩이면 얼마나 큰 돈이예요.

○신동근 위원 취지는 이해하고 또 1인당 매입 금액도 2억, 한도도 24년 말까지 캡을 씌어 놓아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국채를 평균 4조 정도 매입했는데 최근에 16조까지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세 안 해 줘도 지금 돈이 다 그리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또 감세까지 해 줘서 뭘 몰리게 하겠다는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대표적인 부자감세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전체 국채 발행규모는 동일한데 기관용 일반국고채 발행은 축소를 하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

러니까 국채 전체 규모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무슨 일반 기업들의 채권을 구축하게끔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국채를 개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게 되면 거기서 발행하는 이자가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과세해 주면 개인들이 국채를 더…… 세금은 내지요. 14%는 내는데 개인들이 국채를 더 오랫동안 갖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개인의 국채보유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 영국은 한 9%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0.07%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오랫동안, 고령화 시대에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채에 투자를 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냥 놔둬도 많이 사 가게 돼 있어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세금 혜택…… 그냥 사 가라고 개인용 국채를 발행하세요. 뭘 세금혜택을 주면서 개인들이 국채를 못 사 가게 해서 안달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결국은 국채라는 것이 쿠폰 레이트(coupon rate)로 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양경숙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말씀하신 개인용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발행하려는 것은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작은 규모도 살 수 있도록 해서 은퇴한 노인들이 이것을 사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다달이 생계를 하실 수 있는 용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용 국채하고 현재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양경숙 위원 채권에 2억 투자하는 게 뭐 작아요? 증권에 2억도 많은 거예요,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자들 감세시켜 주는 것이라 똑같은 것이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5쪽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안과 정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대해서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그 밖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월세가격은 75만 1000원, 연간 약 900만 원으로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 한도액 75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적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 세액공제 적용자의 공제대상 월세액이 2020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평균 230만 7000원 수준이고 연간 750만 원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여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총급여액 기준 7000만 원은 동 과세특례가 최초로 신설된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서 최근 물가상승률과 월세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전체 근로자의 87%로서 중산·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과약률이 여전히 낮은 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된 3억 원 기준은 2019년에 정해진 것으로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까만 기준시가 3억 원 이외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중부세법에서도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3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 의견은 현재 월세액을 상향 조정한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 말씀대로 세액공제율과 한도, 급여기준 조정 또 주택가격 기준 조정, 네 가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가중되고 있어서 부담을 좀 완화하자라는 취지잖아요?

정부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시가 3억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수도권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두 가지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다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사실 3억 정도까지는 다 해주는 거고, 두 가지가 오어(or)이기 때문에……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알겠고, 그런데 그 외에는 3억으로 묶여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건 지방 저가주택이랑 맞춘 겁니다.

○고용진 위원 지방 저가주택하고 이걸 맞추는 필요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수도권은 5억, 6억, 7억이 되더라도 만약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적용이……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공시지가 5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주택들입니까,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 공시가 5억 넘는 것들이 지금 외곽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월세 들어간다, 그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주택가격 상승을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거보다 큰 규모에 사는…… 이게 지금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데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평수에 산다는 것은 사실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집이 좁아야만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국민주택규모에 비하면 집이 좁은 건 아닌 거지요.

○고용진 위원 외곽에서 예컨대 가족들이 많아서, 여러 경우겠습니까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면 과거에 3억이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의 공시가 3억과 지금 5억과 어느 게 더…… 집이 더 달라졌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이거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똑같잖아요. 국민주택규모와 3억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오어(or)입니다, 앤드(and)가 아니고.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또는 3억’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또 하나의 적용대상인 3억이 지금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라서 5억으로 하자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or니까. 국민주택규모면 공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다음에 5억 또는 3억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이거는 좀 상상을 해 보시면 이게 혜택이 안 되는 분은 수도권에 사는데 한 40평대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진 위원** 그때 3억은 뭐냐고요. 또는 3억이잖아요, 현행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 거지요. 지방에 가서서 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평수가 크더라도 사실 3억 이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고용진 위원** 지방은, 지금 좀 내려가면 3억이면 다 해결이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만약에 그것보다 더 돼서……

○**고용진 위원** 자꾸 얘기가, 내가 헛갈리는 건지 차관님이 헛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제혜택을 주는 게 국민주택규모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거나 이거였잖아요, 이전에 주던 게.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지방이든 서울이든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상승률을 감안해서 하자는 건데, 갑자기 평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지방에 조금 평수는 있지만 또는 서울 외곽에 조금 평수는 있지만,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지만 그래도 소득이 높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2022년도 전국 공동주택 평균가격하고 중위가격이 있는데……

○**고용진 위원** 몇 년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22년도입니다. 이제 시가 기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은 평균가격이 6억 600만 원이고 중위가격은 4억 4300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3억 3200만 원, 중위가격이 2억 8100만 원, 강원·충북·충남 이런 데는 다 1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준시가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중위가격 수준은 다 커버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고용진 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똑같이 가자는 얘기인데 그냥 그 수치만 갖고 얘기하면 조금 말은 될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정부의 주장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과거에 얘기하던 3억의 지방 주택이 지금은 얼마일지 그것 조정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 저가주택 얘기를 할 때도 3억으로 하게 되

면 거의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고용진 위원** 지금은 조정 안 해 줘도 다 커버 된다면 굳이 그걸 5억으로 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반영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말하자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부자들의 중부세는 자꾸 감면해 주자고 그러면서 왜 주택도 없는 서민들의, 임차인들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상향시켜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니, 반대가 아니고 월세액을 그래서 저희가 12%, 15%를 올린 거거든요. 더 해 드리겠다고 지금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용진 위원** 대상을 좀 넓혀 주자는 얘기지요.

○**신동근 위원** 공제액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상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신동근 위원** 대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니까 사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많은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게 30평대 아닙니까, 사실상?

○**신동근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 30평대거든요. 30평대 정도 사시는 무주택에 총급여 7000만 원 정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겠다는 건데, 저는 수도권에 사시면서 40평대에 사시는 분들까지 정부가 월세혜택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나중
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저는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통
해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정부 주택정책이 가
서는 안 된다, 월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제혜택을
줘서 갭투자가 불가능하도록, 갭투자가 점점 줄
어들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일용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장
기적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사다리를 걸어서 버리
게 만드는, 그리고 갭투자를 유도해서 PIR ratio
를 너무 높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주택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라면 월세세액
공제를 과감하게,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과감하게, 또 소득기준도 7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열어서 월세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확
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
리면 차관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액공제 해 줘도 실제 750만 원 다 풀로
받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은 정부가 월세세
액공제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걸 제대로 못 가져가
는, 때로는 소득기준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면세
점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못 가져간단 말
이에요. 그런 점도 있다는 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가 자기 집 없이
월세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시가 3억이면 지금 시가 한 5억 5000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경기에서 5억 5000 정도
도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양질의 집은 아니에요,
평수하고 관계없이.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겠
는데, 그러면 공시가 3억이 아닌 4억이나 5억으
로 하면 조금 더 어렵지만, 무주택자지만 그런
데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3억으로 죽 해 와 놓고 갑자기 집값
이 이렇게 올랐는데 ‘3억이면 됐지요’ 그거는 그
냥 아주 남루한 데서 사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시고, 현재의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 취지는 아닌
데,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평수가 있고 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게 or이기 때문에 따로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
씀을 막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종합
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2쪽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
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는 가구수는 2020년 기준으로 421만 가구
로서 지급규모는 4조 4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일영 의원님 안과 배준영
의원님 안 그리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은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
벌이가구의 소득기준 상한액을 각각 200만 원·400
만 원·520만 원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
안은 재산기준을 현행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 4000에서 1억 7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액을 상향하려는
배준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세 평가
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규 취업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상승률
을 감안할 때 소득기준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해서는 2021년 세법 개정
에 따라서 2022년부터 가구별로 200만 원씩 소득기
준 상한액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지
급 소득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은 21년 기준 1인당 GDP의 54~94%에 해당 되는데 이는 미국의 34%~89%, 영국 45%~62%, 캐나다 31%~48%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확대된 소득기준은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현행 중위소득의 65%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산기준 상한도 이와 맞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가 정하고 있는 2억 4000이라든지 정일영 의원님 안에서 정하고 있는 2억 8000 수준은 소득 2분위 계층, 즉 40%가 갖고 있는 자산평균액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36만 2000가구 중에서 74%인 26만 8000가구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단독가구와 홀벌이·맞벌이 가구의 자산격차를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자산평균액은 2억 원 미만인 반면에 4인 가구는 6억 7000만 원으로서 1인 가구와 자산평균액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재산기준 상한액을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을 때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상당수의 가구가 평균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 평균 자산액보다 높은 수준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쪽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은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312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홀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급액이 늘어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최대지급액 인상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지급수준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조 999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9557억 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 감면액 기준으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조세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심층평가는 2016년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독가구와 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 영유아 가구 중에서 평균적으로 취업모는 월 15만 5400원, 미취업모는 월 13만 원 정도가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서 월 보육비·교육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벌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양비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단독가구와 홀벌이·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이 내용이 길고 한테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우선 근로장려금의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근로장려금 자체가 과연 저소득층 근로장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진중한 판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오늘 좀 늦게까지 진행하실 것 같은데 적당한 시점에서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까지 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이 책을 다 끝내고 하지요. 5권 다 끝냅시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현재 제안된 법률안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콤팩트(compact)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영어로는 EITC,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돼 있어서 미국에도 하고 있고 캐나다도 하고 다른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근로장려가 됐는지,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퍼센트 계속 올리고……

현재 SOCX, 소셜 익스펜디처(social expenditure), 그러니까 사회적 지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차관님, 안 들어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사회적 지출에 들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사회적 지출에 들어간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복지지출에 안 들어가는 데 어떻게 사회적 지출에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건 복지지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복지지출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전체 복지제도 관련되는 사항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것만 계속 올려서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정부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EITC는, 근로장려세제가 일자리 문제나 또 소득 불평등의 개선 이런 데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평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 법인세도 몇조 깎아 주자는 판에 이런 것은 좀 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내놓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각 점증·평탄·점감 구간에 노동공급의 효과 관련된 분석을 제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홉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행정부에서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일 안 해도 다 주는 거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일정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도 또한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의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이걸 좀 늘려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노동을 전제로 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그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됐었던 취지도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근로를 전제로 하지 못한 빈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런 일괄적인……

사실 EITC는 다른 복지제도들,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봤을 때 다른 복지들 말고 근로를 전제로 해서 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걸 더 강화하자는 아이디어에 입각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EITC 대상도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조세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장님이 그 효과를 분명히 분석해 봐야 된다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중위소득 50% 사이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ITC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은 글썄요,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야의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자산기준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구 36.2만 가구 중에 74%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6쪽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관련 조세지출규모는 2022년에 4937억 원이고 2023년에는 다시 604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장려금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따가 합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해 주자라는 건데 저는 저소득층 미성년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의 합계도 공시가액이긴 합니다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3억 원 미만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5월에 신청을 하라, 그런데 만약에 늦게 신청하면 10% 지원금을 깎아서 지급하고 있지요, 현행에도? 맞지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맞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난한 분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분들은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한 달 놓치는 것 금방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 못 하면 지원금이 대폭 깎이는 거잖아요. 적어도 1년 내내 언제나 신청해도 지원금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페널티를 크게 줘서야 되겠어요? 이 제도 개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환수한 액수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0년에 87억을 다시 회수했던 말이에요. 늦게 신청했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깎아서 내보내셨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녀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

면 지금 부자감세, 법인세도 몇 조씩 깎아주면서 이것 몇백억 정도 줄어드는 건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저는 대폭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약간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로를 장려할 수는 있어도 자녀는 어떻게 장려하지 싶기도 해서, 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양육지원금이나 이런 좀 더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양경숙 위원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자녀장려금, 양육장려금인지 모르겠는데 이 장려금 지급하고 재산기준이 아마 근로장려금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자녀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용어 관련해서 양육비니까 전체 자녀양육비 관련된 재정지출 전부 다 모아 주시고, 물론 직접지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출생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해서 직접지원되는 것 전체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부분과 같이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열 번째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의료비 세액공제를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1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지출에 대해서는 3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기본공제한도와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72쪽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 원에서 21년 3조 1882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3조 4191억 원으로서 조세지출규모로는 전체에서 약 4~5위 정도에 해당하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73쪽부터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과 정부안에서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류성걸 의원님……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사항 바로 하겠습니다.

73쪽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관련된 사항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영화 쪽은 대자본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공연업계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그 부분은 왜 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공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다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신동근 위원 그러면 뭐……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사항 없으시면 신동근 간사님도 찬성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신

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영화관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에 말하자면 그런 멀티플렉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일까 하는 부분하고요.

일단 영화관람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극장사업자들이 영화관람료에 관련해 가지고 담합을 하고 있는 종류의 문제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문화예술과 영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영화관람 촉진에 미치기보다는 그런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좋은 말씀입니다.

차관님, 현재 문화바우처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 부분을 장혜영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영화관 담합 관련해서도 현재 규제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중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혜영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소위원장 류성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바우처,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영화 관련해서 직접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화바우처 있다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문화바우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관련된 설명을 좀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아니고 재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장혜영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세제혜택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7쪽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님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90%의 공제율로, 그다음에 류성걸 의원님과 정부안은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하고 류성걸 의원안하고 같은 거예요? 40에서 80%로 똑같은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사항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있습니다.

저만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의견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래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니까 의견을 성실하게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이렇게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세점 이하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한다면 찬성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것은 알뜰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그 부분도 알뜰교통카드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같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납득을 하시면 잠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차관님,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도서에 가는 여객선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객선도 소득공제율 상향의 같은 혜택을 받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받습니다.

○배준영 위원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예, 대중교통 범

위에 철도, 버스, 해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혜영 위원님께 관련되는 알뜰교통카드 충분히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0쪽입니다.

정부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현재 총급여액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던 것을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추가공제한도를 각각 100만 원씩 부여하던 것에서 통합하여 300만 원씩 부여하면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첫째, 현재의 공제한도 3개는 소득구간별로 기본공제한도 및 추가공제한도 등을 각각 적용하는 등 복잡한 공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둘째, 총급여액 700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법이나 조특법에서 대상을 구분하는 제도는 다수가 있지만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으로 구분하는 제도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이 신용카드공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으로 별도로 구간을 설정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한도 조정과 관련해서 총급여 구간별 기본공제한도 초과 비율을 보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구간에서는 82%가 이미 기본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안에 따른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에는 결국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대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50만 원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역진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몰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걸 제가 2022년도 조세소위에 있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에도 간곡

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었던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편화를 위한 혜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서도 보듯이 사실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충분히 보편화가 됐고 이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일몰을 한다고 해도 다른 후퇴 현상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는 중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반가운 제도로 여겨지는 것은 있지만 저는 가끔은,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얘기를 하는 용기가 국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하다못해 21대에는 그래도 이 고리를 끊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일몰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에서 함께 동의를 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안을 내셨지만 배현진 의원님 안 정도로 이걸 적어도 21대에서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장혜영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취지와 또 당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3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이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소비의 활성화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그래서 단순히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부의 창출화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장혜영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장혜영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취지는 도입 취지를 달성했으니까,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은 관련되는 그 이후의 파생 효과랄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되는 사항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고.

신동근 간사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장혜영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충분한 논의와 계도기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그걸 정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판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도입 취지의 달성 여부 또 거의 달성했느냐는 의견과 신동근 간사님의 1000만 명 이상의 혜택 관련된 신중한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한도 상향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7쪽입니다.

2022년도, 금년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정부가 올해 3월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전년도 소비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로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2022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 세율로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했고 소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장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 자체가 일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안에 있어서 개정 세수효과를 기재부가 추정 곤란하다고 쓰셨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더 소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소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정 곤란입니다.

○장혜영 위원 아마도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입된 취지 그 자체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소비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간주하고, 그래서 추정할 수도 없는 개정 세수효과를 두고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은 기본 취지에 관련된 사항과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의 사항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90쪽입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전화망을 통해서 5000원 미만 거래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에 대해 일몰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2025년 말까지 일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분야 관련해서 9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현재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의 주식 중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에서 50% 이상을 다시 벤처투자조합 등에 재투자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과세이연하고 있는 주식 양도 차익 중에서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만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무에서도 재투자한 금액 중에서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적용기한에 2023년 1월 1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거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오타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현재 규정이 23년까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의견 없으시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대상 명확화는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95쪽입니다.

현재 2020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2022년 말까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과 정부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24년 말까지 등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있어서도 현재 8년 이상 임대기간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임대에 대해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10년 이상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의 순증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70%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10년 이상 임대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법문언과 관련해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감안했을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는 8년 이상 임대는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한 연장을 통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동 조항의 법문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실무자, 괜찮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배준영 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문언은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고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0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해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자의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속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을 토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지연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문언을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해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의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102쪽에 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4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등의 가액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전제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현행 2억 원 그리고 한옥은 4억 원인 농어촌주택의 가액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 농어촌주택 등의 가액기준이 2억 원으로 계속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 지방 저가주택 가액기준과 종부세 법상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이 모두 3억 원이라는 점에서 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2년 전국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3억이고 중위가격이 1억 9200만 원인 상황에서 3억 원 또는 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4억 원으로 상

향 조정하고자 하는 김승남 의원님과 윤재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비싼 한옥주택의 건축을 촉진함으로써 한옥주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동 조항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 2억·4억을 그러면 3억·4억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유동수 위원 왜 한옥은 안 올려?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2억·4억을 기준으로 했으면, 한쪽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렸으면 한옥은 비싸니까 그래도 뭐 5억으로 한다면가 이런 게 맞지 한옥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난번 종부세 때 우리가 지방주택 3억으로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2억을 그것보다 더, 고향주택이나 귀향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3억보다 더 올리는 게 입법에는 맞지만 3억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농어촌인구 감소 시대에 이렇게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안 정도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중위가격이 2억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액기준을 또 상향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 기준 내의 주택들 평균가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고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농어촌주택에서 소재지요건에 이 지역 외의 소재라고 했는데 접경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접경지역이라는 거는 수도권지역이라 해도 접경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또 오늘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 중에 관련되는 법안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까지 일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심도 있으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소위원장 류성길 예,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제가 좀 잘못 짚어 가지고……

소재지요건에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접경지역 제외)’라고 돼 있는데 고향주택은 2번 항에 보면 그냥 수도권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제외라고 해야지 그게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준영 위원 103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는 접경지역 제외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접경지역 제외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다시 한번 검토……

○전문위원 김경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준영 위원 법률안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지요, 같은 내용인데.

○소위원장 류성길 이 부분은 시행령이든지 또 법문언이든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병합심사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일몰기한 연장(4권) 관련 논의 결과에 관련된 사항을 제목과 연장기한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4권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조특법의 일몰기한 연장만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4권 논의 결과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중에서 일몰 연장만 있는 부분입니다. 일몰 연장과 더불어 공제율 상향이라든지 조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권, 6권에 반영돼 있고요. 4권에 대해서는 순전히 일몰 연장만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정부안대로 3년으로 하는 것들은 의견 일치를 하였고요. 다만 연번 28번, 29번을 보시면 28번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29번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인데 이 부분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전문위원 설명대로 1쪽과 2쪽에 나열돼 있는 내용과 또 3쪽에 나열돼 있는 내용 중에서 28번과 29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일몰 연장기간을 3년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한 건 한 건 논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용에 관련되는 것보다도 일몰 연장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는 3년 일몰 연장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외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4권 관련 전체 내용 중 연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4권을 훑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게 다 일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더라

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법안들을 하나하나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하더라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조세특례 중에서 일몰 연장에 대한 것만 이렇게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45개 연번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그냥 다 말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시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 연장하는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든지 또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혜영 위원 이게 상식적인 진행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공감하시는 바이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용 하나하나에 관련되는 사항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위원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내용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있던 내용을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몰되는 사항들을 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조특법 중에 국회 자료 4권은 당초에 비쟁점 법안으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우리가 월, 화 이틀간 조세소위가 공전됐기 때문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이런 진행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타 법안에 대한 심사 등을 고려할 때는 지금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하

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또 안건 전체를 분류해서 책자로 만들 때 일몰 연장과 관련된 사항만 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권이나 6권 관련되는 사항은 일몰 연장과 내용의 변경이 있는 사항들은 따로 묶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든지 또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단 비쟁점 법안들을 일몰 연장 관련돼서 묶어서 4권으로 편집하신 것은 사실 비교섭단체인 저의 관점에서 이것이 비쟁점이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님들이 비쟁점 법안들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위에서 개별 법안들을 심사할 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다 일몰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조세특례들이 이렇게 도입됐었던 데에는 각각의 맥락이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일몰이 될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것은 연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되게 이렇게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이 법안에……

○유동수 위원 몇 페이지예요?

○장혜영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15쪽 보시겠습니다. 15쪽 내용입니다.

○장혜영 위원 이걸 자료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바로 이견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유동수 위원 소부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혜영 위원 맞습니다. 이미 소부장의 특화선도기업들이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로 현재까지 조세지출이 없었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유지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조세지출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는 특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세지출이 없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있다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전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소부장 특화기업이 21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분을 넘길 때에 대한 혜택인데 보통 21년에 선정이 돼서 22년도에 뭔가 지분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23년도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은 내년부터 뭔가 신고가 생기고 세제혜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야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괜찮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평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신동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논의하면서 사실은 류성걸 간사님께서도 지금 성과도 없는데 뭐 연장하냐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2년 전인가요? 일본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정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과가 나오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혜영 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 조건을 좀 더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심층평가 결과로 벤처기업별 한도 미설정으로 소수 벤처기업에 세제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분석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찬성을 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장혜영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난 뒤에 찬성의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장혜영 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통 직장에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취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리 내지는 격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계지어져 있는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표준사업장들에서 계속 폐쇄적인 운영, 학대 이런 문제들이 그 취지와는 반대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이미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나오는 방법을 강화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이것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인정하지만요.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인정하되 관련되는 사항,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법인세 인하를 이런 데서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한 다음에 방안을 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7페이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택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을 보유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부동산 환경에서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한정적이고 분양가상한제하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노린다든가 주거 사다리에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되는데 과연 이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뭔가 의견을 달아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22번 항에 대해서는 장혜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의 상가임대료, 착한 임대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부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인 만큼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성과랑 실효성을 평가해서 재연장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 이 적용기한 연장에 관해서 2015년부터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들만 면세 대상에서 제외 중인데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85~135㎡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자들한테도 면세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분류 그리고 소득별 분류를 확인해서 면세혜택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116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관한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이것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비슷한 제도가 해외 사례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연 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그 다음에 있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 적용기한, 이것은 일단 평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와 외국인 환자를 실제로 유치한 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내국인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동수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27번, 76쪽에 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1호 임대 시 30%, 2호 이상 임대 시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주택의 경우 75% 그다음에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222억 정도 소득세 조세지출이 있다면 이걸 임차인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답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제도를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깎아줍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임대료 상승……

○유동수 위원 아니, 전가될까 봐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임대료 상승제한 의무를 지킨 자라든지……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 뭐 있잖아요.

이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임대료가 안 올랐냐고.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임차인에게 이 세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지.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신 건데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이 임대료 상승 부분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겠다는 그 정도의 혜택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등록임대사업자가 나온 배경이 사실은 임대료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반대로 얘기해 보면 등록임대사업자 넣어 가지고 여러 채 가지고 집값을 올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재부가 고민을 좀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사실은 8년짜리 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를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10년짜리를 남긴 거고.

○**유동수 위원** 5년짜리 없애고 10년으로 갔지. 단기를 없애고 장기로 갔잖아요. 장기가 10년으로 갔고 4년·8년을 5년·10년으로 바꿨고, 그래서 단기는 없애고 장기만 남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사실 그 당시에 주택시장이……

○**유동수 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도 2025년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월세 사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그건 세액공제하지 않습니까?

○**유동수 위원** 월세세액공제, 그다음에 임차인도 임차료를 내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4권은 일몰기간 연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좀 전에 장혜영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일몰기간을 3년이 아니라 좀 단기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같이 해서 일단 그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에 대해서 잠정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권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사항은 6권입니다.

6권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항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부를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 사항은 내일 10시 전체회의 때 추가적으로 상정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안건하고 또 6권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내일 다시 조세소위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정된 안건들이 조세소위에 회부되면 그 회부된 안건 중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논의하고 또 6권을 논의하고 또 그전에 논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고 용 진	김 상 훈	류 성 결	배 준 영
신 동 근	양 경 숙	유 경 준	유 동 수
장 혜 영	조 해 진	진 선 미	한 병 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방 기 선
세 제 실 장	고 광 호
조세총괄정책관	정 정 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 용 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 만 희
관 세 정 책 관	김 재 신
조 세 및 고 용 보 험	김 건 영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